

서울시 산재예방정책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22. 12. 31.

연구기관 : 노무법인 참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서울시 산재예방 정책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노무법인 참터
대표 고 경 섭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귀하

【목 차】

제1장 서론	7
1. 연구 배경 및 목적	7
2.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서울시 산재예방정책 수립 필요성 검토	15
1. 새로운 산업구조 및 고용형태의 산업안전보건법제 사각지대	15
(1) 산업구조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제	15
(2) 고용 형태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제	16
(3) 새로운 고용형태의 산재 실태	18
2.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예방감독행정의 사각지대	20
(1)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방감독행정력 부족	20
(2) 소규모 영세 사업장 산재 실태	21
3. 산재 취약노동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필요성	25
제3장 타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조례 비교 검토	27
1.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산재예방조례 제정 현황	27
2.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산재예방조례 제정 현황	29
(1) 서울특별시	29
(2) 대구광역시	30

(3) 인천광역시	30
(4) 광주광역시	31
(5) 대전광역시	31
(6) 울산광역시	32
(7) 경기도	32
(8) 강원도	33
(9) 충청북도	34
(10) 충청남도	35
(11) 전라북도	35
(12) 전라남도	36
(13) 경상북도	37
(14) 경상남도	37
3. 교육청 산재예방조례 제정 현황	39
4.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 상 주요 정책 및 사업 비교 검토	40
(1) 적용범위	40
(2) 사업주의 협력 및 협조	40
(3) 노동안전조사관 제도	41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41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거버넌스 구조	42
(6) 노동안전보건계획	42
(7) 노동안전보건센터	43

(8) 기업 인증 및 포상	43
(9)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	43
(10) 보호구 구입 및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43
(11) 노동안전보건컨설팅	43
(12) 산재 노동자 치료 지원	44
(13) 노동자 참여 확대 방안 마련	44
(14) 유해작업 도급 금지	44
(15) 중대재해 발생 기업 제재	44

제4장 타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정책 사례 검토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45
1.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45
2. 경기도 산재예방정책 집행 조직 현황	48
3. 경기도 산재예방정책 및 주요 사업	50

제5장 해외 산재예방정책 사례 검토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55
1.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단위 산재예방정책 집행 구조의 특징	55
2. 오사카(大阪) 노동국의 「리스크 ‘제로’ 오사카 추진운동」의 취약노동자 산재예방정책 사례	57
3. 도쿄(東京) 노동국 제13차 노동재해 방지계획의 취약노동자 산재예방	

정책 사례	58
4. 가나가와(神奈川)현 산재방지 중점대책의 취약노동자 산재예방정책 사례	59
5. 후쿠오카(福岡)시 공공 공사 산재예방 추진 사례	61
6. 가고시마(鹿児島)현청의 총괄안전위행위원회 및 관계 부서간 산재예방 네트워크 구축 사례	63
7. 나가노(長野)시청의 재해 사례의 공유와 리스크 어세스먼트(Risk Assessment) 추진 사례	64
8. 가와구치(川口)시청 멘탈헬스 진단 및 조직분석 실시 사례	65
제6장 결론 : 서울시 산재예방정책 수립 방안 검토	66
1. 서울시 산재예방정책의 기본 방향	66
(1) 산재취약노동자 보호를 중심으로	66
(2) 서울시 공공부문 중대산업재해 감소를 중심으로	67
(3) 서울시가 지닌 권한의 적극적 활용을 중심으로	67
(4) 안정적 법제도 환경 구축을 중심으로	68
(5)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68
(6) 현장노동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69
2. “(가칭) 일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산재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 제정	71
3.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산재예방점검회의” 구성 및 운영	73

4. “산재예방 정책자문위원회” 및 “유관기관, 지역별, 직종별 정책 협의체” 구성	75
5. “건강하고 안전한 플랫폼 노동 생태계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77
6. 소규모 영세 사업체 산재예방을 위한 “상시 지원 시스템” 과 “소규모 사업장 서울형 산재예방 인증” 프로그램 구축	79
7.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과 단위 전담부서” 설치	81
8. 산재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 및 자치구 노동자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	83
9. 플랫폼 노동자 표준 계약서 및 표준 근로조건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85
<참고 문헌>	87
<참고 자료>	89
<부록>	90

연구진

책임연구원 : 유 성 규 (노무법인 참터)

공동연구원 : 임 창 식 (노무법인 선)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 및 고용노동부 예방감독행정의 주된 법적 근거인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제정되었음. 제정 시점으로부터 4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의 산업구조는 매우 크게 변화했음.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규율 체계를 간직하고 있음. 이에,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유해요인 및 유해물질에 대한 예방 및 감독을 위한 규정들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함.

○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1981년의 주된 고용형태인 직접고용·종신고용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파견, 도급 등 간접고용, 기간제, 단시간 등 저숙련 노동으로 야기되는 유해위험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함. 더욱이, 전통적 근로계약관계 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주된 보호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어서,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노동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음.

○ 최근에는 특수고용노동자 중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를 누가 지급하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모호한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에 따르면,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약 80만 명에 이르고 있음.

[표 1-1] 2021년-2022년 플랫폼 노동자 규모

(단위: 명, %)

직종	'21년	'22년	증감률
배달·배송·운전	502	513	2.2
전문서비스 (통·번역·상담 등)	53	85	60.4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31	57	83.9
가사·청소·돌봄	28	53	89.3
미술 등 창작활동	19	36	89.5
IT 관련 서비스	14	17	21.4

출처: 고용노동부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

○ 이처럼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제 및 고용노동부의 예방감독행정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음. 이에, 최근 특수고용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가 배달업종을 중심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표 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무상 사망 사고 발생 현황

(단위: 명, %, %p)

구분	계	퀵서비스기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2년	63	39	61.9	14	22.2	7	11.1	3	4.8	0	0.0
'21년	36	18	50.0	7	19.4	9	25.0	1	2.8	1	2.8
증감	27	21	11.9	7	2.8	△2	△13.9	2	2	△1	△2.8

출처: 고용노동부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 고용노동부 “2021.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은 1.76인 반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은 0.72였음. 또한 전반적으로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사망만인율은 작아지고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사망만인율은 커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이는 위험의 외주화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으로 유해위험한 업무가 집중되면서 비롯된 현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표 1-3] 업무상 재해 사업장 규모별 현황

구 분	2021. 1~12월			전년 동기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 만인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 만인율
총 계	19,378,565	122,713	0.63	18,974,513	108,379	0.57
		2,080	1.07		2,062	1.09
5인 미만	3,212,578	37,267	1.16	3,005,960	33,862	1.13
		567	1.76		500	1.66
5인~49인	8,383,877	51,909	0.62	8,272,899	47,048	0.57
		792	0.94		803	0.97
50인~99인	1,999,615	9,653	0.48	1,979,709	8,073	0.41
		174	0.87		160	0.81
100인~299인	2,577,703	11,341	0.44	2,523,122	8,933	0.35
		210	0.81		260	1.03
300인~999인	1,699,694	6,542	0.38	1,708,100	6,180	0.36
		229	1.35		255	1.49
1,000인 이상	1,505,098	6,001	0.40	1,484,723	4,283	0.29
		108	0.72		84	0.57

출처: 고용노동부 2021.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주) 재해율(%)은 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을 의미하며, 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사망만인율(‰)=(사망자수/근로자수)×10,000]을 의미함.

○ 업무상 사고 사망의 원인을 분석하면, 떨어짐 사고, 끼임 사고, 부딪힘 사고

와 같이 기본적인 안전수칙, 안전설비, 안전보호구 등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다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업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와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임.

[표 1-4] 업무상 사고 사망 규모별 현황

구 분	총계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무너짐	끼임	절단 베임 찢림	감전	폭발 파열	화재	깔림 뒤집힘
계 (%)	828 (100.00)	351 (42.39)	17 (2.05)	72 (8.70)	52 (6.28)	32 (3.86)	95 (11.47)	5 (0.60)	16 (1.93)	26 (3.14)	18 (2.17)	54 (6.52)
총계	5인 미만	318	158	3	16	18	18	4	5	11	3	26
	5~9인	120	53	1	14	8	1	14	0	3	1	10
	10~19인	113	44	5	9	5	3	19	0	3	2	6
	20~29인	64	24	1	8	3	1	6	0	3	6	3
	30~49인	55	23	1	6	3	1	9	0	1	1	2
	50~99인	54	17	4	7	4	2	4	0	0	2	4
	100~299인	56	20	1	5	3	4	11	0	0	1	2
	300~499인	14	4	0	4	2	0	2	1	0	0	0
	500~999인	16	4	1	2	3	2	2	0	0	1	0
	1,000인 이상	18	4	0	1	3	0	3	0	1	1	0

구 분	이상 온도 물체 접촉	빠짐 익사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화학 물질 누출 접촉	산소 결핍	사업 장내 교통 사고	사업 장외 교통 사고	체육 행사	폭력 행위	동물 상해	기타	분류 불능
계 (%)	1 (0.12)	10 (1.21)	0 (0.00)	7 (0.85)	4 (0.48)	5 (0.60)	56 (6.76)	0 (0.00)	0 (0.00)	6 (0.72)	0 (0.00)	1 (0.12)
5인 미만	1	4	0	1	2	0	22	0	0	1	0	0
5~9인	0	1	0	1	1	0	10	0	0	1	0	0
10~19인	0	0	0	1	0	0	10	0	0	3	0	0
20~29인	0	0	0	1	0	0	5	0	0	0	0	0
30~49인	0	1	0	1	0	1	2	0	0	0	0	1
50~99인	0	1	0	0	1	1	3	0	0	0	0	0
100~299인	0	3	0	0	0	1	3	0	0	1	0	0
300~499인	0	0	0	0	0	0	1	0	0	0	0	0
500~999인	0	0	0	0	0	0	0	0	0	0	0	0
1,000인 이상	0	0	0	2	0	2	0	0	0	0	0	0

출처: 고용노동부 2021년 산업재해현황분석

○ 2021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정원은 815명에 불과하여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예방감독 및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임. 더욱이, 2022.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가 증가하여,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예방감독 및 지도를 기대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산재예방감독 행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임. 물론 서울시 역시 이미 자체적인 산재예방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으나,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에 맞추어 효과적인 산재예방 정책방안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수립, 집행되고 있는 산재예방정책,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산재예방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산재취약노동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의 산재예방정책의 방향과 구체적 사업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산업재해 실태, 원인, 변화 추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전통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정책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산재예방정책에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을 정리해 보도록 함.

○ 우선, 서울시 산재예방정책 및 사업 수립을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산재 예방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정 현황을 비교, 정리해 보고 이를 통해 서울시 산재예방정책과 관련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의 방향을 도출하도록 함.

[표 1-5]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현황

지방자치단체명	조례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경기도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강원도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지방자치단체명	조례명
충청북도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충청남도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라북도	전라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라남도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경상북도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경상남도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산재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례를 경기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정책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서울시 산재예방정책 및 사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함.

[표 1-6] 해외정책사례(일본) 검토 리스트

- 제13차 도쿄(東京)노동국 노동재해 방지계획 (도쿄 노동국)
- 가나가와(神奈川)현 산재방지 중점 대책 (가나가와 노동국)
- 리스크"제로"오사카 추진운동 (오사카 노동국)
- 후쿠오카(福岡)시 공공공사 안전추진계획 (후쿠오카시 공공공사 안전추진위원회)
- 2021년도 노동안전위생 행정의 과제 (교토 노동국 노동기준부)
- 파견노동자에 관한 노동조건 및 안전위생의 확보에 대하여 (후생노동성)
- 고령노동자의 안전과 건강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책정에 관하여 (후생노동성)
- 노동자의 마음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지침 (히로시마시 히로시마현 노동국)
- 직장에서의 건강관리 서포트 가이드 (가고시마현)

○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산재예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영
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산재예방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 사업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제2장 서울시 산재예방정책 수립 필요성 검토

1. 새로운 산업구조 및 고용형태의 산업안전보건법제 사각지대

(1) 산업구조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제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제와 고용노동부의 예방감독행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법적 기초로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산업구조조정이 한참 진행되던 시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제정되었음.

○ 1981년의 산업구조는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었고, 현재의 주력 산업인 서비스업, IT, 반도체 산업 등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음. 이에,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업, 제조업 등 전통적 산업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

○ 1981년으로부터 40여년이 경과한 현재의 산업구조는 매우 크게 변화했음. 1981년에 비중이 작았던 서비스업, IT, 반도체 산업 등의 비중이 커지고 이에 따라 새로운 유해위험요인들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두 차례에 걸친 전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1981년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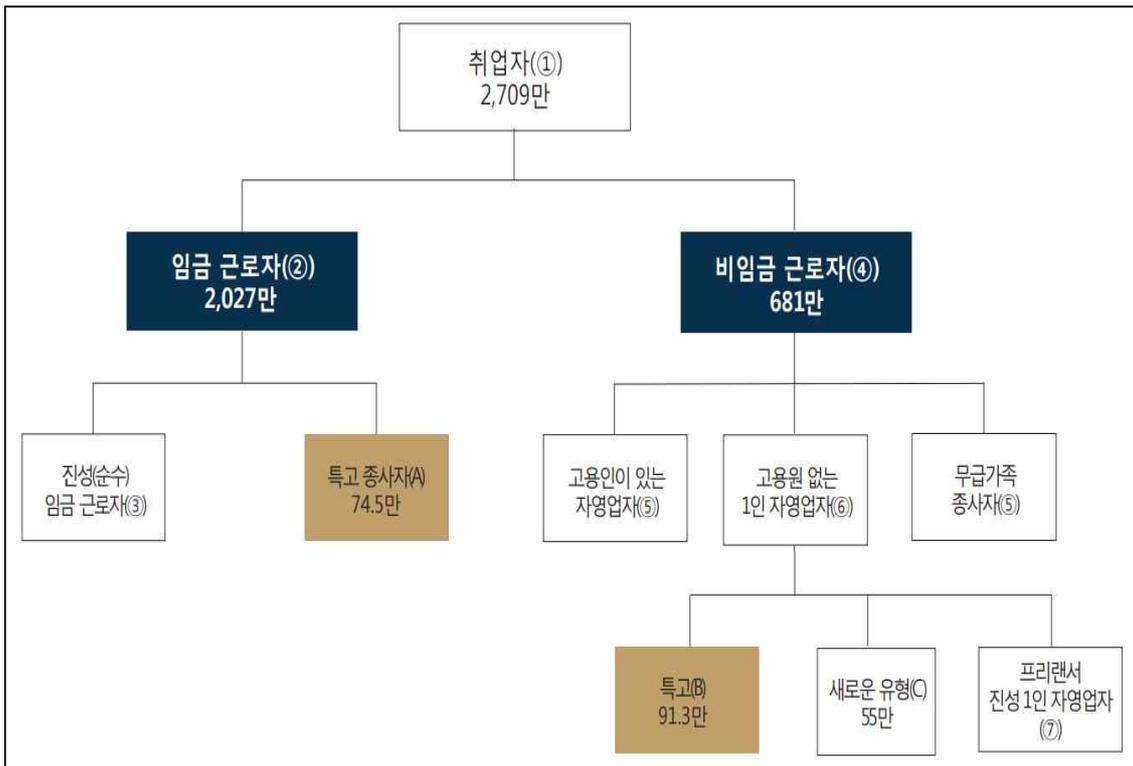
○ 이에, 감정노동·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 반도체 공정 등 새로운 작업 공정에서 야기되는 새로운 유해위험물질, 배달·택배·대리 등 교통사고 위험성, 공정의 대규모화·복잡화로부터 야기되는 새로운 유해위험요소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구조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이를 기초로 한 고용노동부의 예방감독행정 역시 많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음.

(2) 고용 형태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제

○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1981년의 고용형태의 특성은 직접고용·종신고용이 주를 이뤘음. 그러나 현재의 고용형태는 파견, 도급 등 간접고용이 크게 늘었고 기간제 고용 역시 보편화되어 있음. 또한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노동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도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

○ 정홍준(2019)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A)와 비임금근로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B)를 모두 합하여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특수고용노동자의 전체 규모를 추정하면 165.8만 명(=74.5만 명 + 91.3만 명)이었음. 더욱이, 1인 자영업자이지만 특수고용노동자에 비해 종속성이 약한 새로운 유형의 종속적 계약자도 5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까지 특수고용노동자에 포함하게 되면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됨.

[그림 2-1] 특수고용노동자의 유형



출처 : 정흥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 고용·노동 브리프 제88호(2019-3),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노동부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에는 특수고용형태에서 더 나아가 노무를 제공 받는 주체조차 모호한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플랫폼 노동자의 전체 규모는 주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가형을 모두 포함할 경우 795,000명에 이르렀음. 플랫폼 노동자 중 57.7%는 주업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수치였음. 간헐적 참가형의 비중도 21.2%로 전년 대비 91.9% 증가했으나, 부업형의 비중은 21.1%로 전년 대비 35.8% 감소했음.

[표 2-1] 플랫폼 노동자 규모

구분	'21년(천명, %)	'22년(천명, %)	종사자 수 증감률(%)
주업형	312 (47.2)	459 (57.7)	47.0
부업형	261 (39.5)	168 (21.1)	△35.8
간헐적 참가형	88 (13.3)	169 (21.2)	91.9
전체	661 (100)	795 (100)	20.3

출처: 고용노동부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자료

(3) 새로운 고용형태의 산재 실태

○ 고용노동부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자료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사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2년 특수고용노동자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63명이었는데, 이 수치는 2021년에 비해 27명 증가한 수치임.

[표 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무상 사고 사망 발생 현황

(단위: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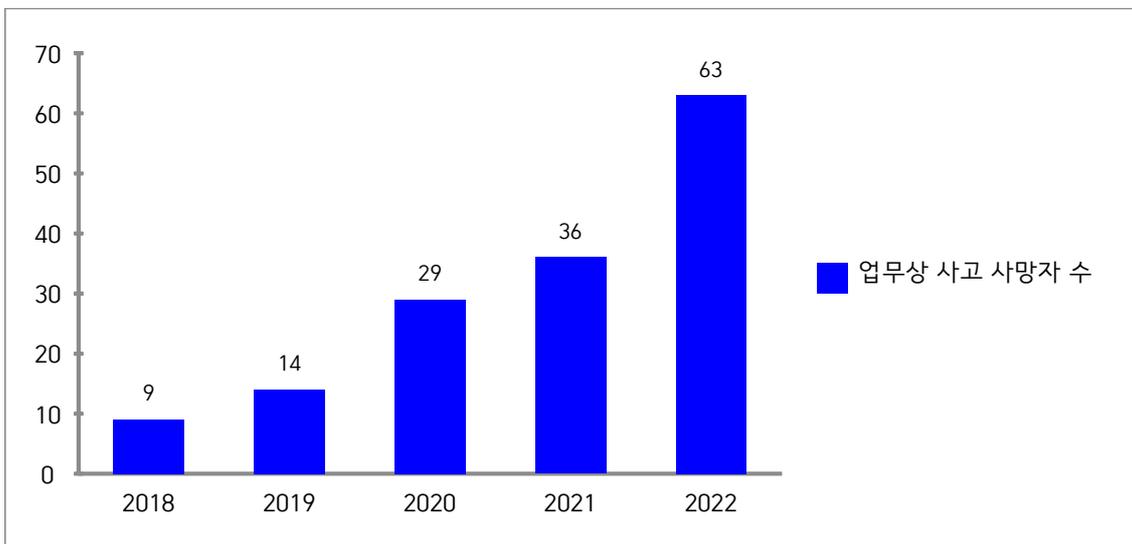
구분	계	퀵서비스기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2년	63	39	61.9	14	22.2	7	11.1	3	4.8	0	0.0
'21년	36	18	50.0	7	19.4	9	25.0	1	2.8	1	2.8
증감	27	21	11.9	7	2.8	△2	△13.9	2	2	△1	△2.8

출처: 고용노동부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 최근 5년간 특수고용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사망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명, 2019년 14명, 2020년 29명, 2021년 36명, 2022년 63명으로 사망자 수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 원인은 플랫폼 노동자 규모의 증가, 산재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 및 고용노동부의 예방감독행정이 전통적 근로관계에 기반하고 있어 새로운 고용형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원인으로 판단됨.

[그림 2-2] 2018년-2022년 특수고용노동자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2.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예방감독행정의 사각지대

(1)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방감독행정력 부족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정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806명으로 2021년 대비 9명이 감소했음.

[표 2-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정원 및 현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정원	448명	570명	681명	705명	815명	806명
현원	409명	438명	539명	569명	741명	793명

출처: 뉴스핌 2023.2.6.자 기사

주) 위 기사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음

○ 2021. 12월말 기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수는 2,719,308개소,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수는 18,974,513명이었음. 따라서 2022년 기준 806명의 산업안전감독관이 모두 충원되더라도, 산업안전감독관 1인당 3,374개소, 23,542명을 담당해야만 함.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 제대로 된 예방감독행정을 펼치기는 객관적으로 어려움.

[표 2-4]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수 및 대상 근로자수

연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수(개소)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수(명)
2020년	2,719,308	18,974,513
2021년	2,876,635	19,378,565

출처: 고용노동부 2021.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 더욱이, 2022.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가 증가하였으나, 2022년부터 정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내실있는 예방감독행정을 기대하기 더욱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었음.

○ 결국,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의 예방감독의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업무상 재해가 심각한 주요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음. 이에, 최근 이와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요구,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을 위임하거나 공유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하였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과 조례 제정이 가능함을 규정하였음. 이와 같은 입법적 변화 역시 앞서 살펴본 정책적 요구들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

(2) 소규모 영세 사업장 산재 실태

우리나라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산재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사업장 규모별 산

재 실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사고 재해율 내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비교해야 함. 고용노동부 2021.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재해율은 1.06, 사고사망만인율은 0.99이고 5인-49인 사업장의 사고 재해율은 0.53, 사고사망만인율은 0.42임. 이 반면에, 300인-999인 사업장의 사고 재해율은 0.33, 사고사망만인율은 0.22이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재해율은 0.23, 사고사망만인율은 0.12임.

[표 2-5] 사업장 규모별 업무상 사고 실태

구 분	2021. 1~12월			전년 동기		
	근로자수	사고 재해자수	사고 재해율	근로자수	사고 재해자수	사고 재해율
		사고 사망자수	사고사망 만인율		사고 사망자수	사고사망 만인율
총 계	19,378,565	102,278	0.53	18,974,513	92,383	0.49
		828	0.43		882	0.46
5인 미만	3,212,578	33,934	1.06	3,005,960	31,159	1.04
		318	0.99		312	1.04
5인~49인	8,383,877	44,782	0.53	8,272,899	41,524	0.50
		352	0.42		402	0.49
50인~99인	1,999,615	7,760	0.39	1,979,709	6,679	0.34
		54	0.27		53	0.27
100인~299인	2,577,703	8,596	0.33	2,523,122	6,715	0.27
		56	0.22		78	0.31
300인~999인	1,699,694	3,700	0.22	1,708,100	3,880	0.23
		30	0.18		23	0.13
1,000인 이상	1,505,098	3,506	0.23	1,484,723	2,426	0.16
		18	0.12		14	0.09

출처: 고용노동부 2021.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재해율 및 산재사망만인율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 및 산재사망만인율을 비교할 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산재 실태가 상대적으로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음. 이는 위험의 외주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재정과 관리 능력 등의 결과로 판단됨.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 및 고용노동부의 예방감독행정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소규모 영세 사업장 산재의 심각성은 그 발생 원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2021.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떨어짐, 부딪힘, 물체충격, 끼임, 깔림, 뒤집힘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보호구, 설비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고 유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표 2-6] 업무상 사고 사망 원인

구분	총계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무너짐	끼임	절단 베임 찔림	감전	폭발 파열	화재	깔림 뒤집힘	
계 (%)	828 (100.00)	351 (42.39)	17 (2.05)	72 (8.70)	52 (6.28)	32 (3.86)	95 (11.47)	5 (0.60)	16 (1.93)	26 (3.14)	18 (2.17)	54 (6.52)	
총계	5인 미만	318	158	3	16	18	25	4	5	11	3	26	
	5~9인	120	53	1	14	8	14	0	3	1	1	10	
	10~19인	113	44	5	9	5	3	19	0	3	2	6	
	20~29인	64	24	1	8	3	1	6	0	3	6	3	
	30~49인	55	23	1	6	3	1	9	0	1	2	2	
	50~99인	54	17	4	7	4	2	4	0	0	2	4	
	100~299인	56	20	1	5	3	4	11	0	0	1	2	1
	300~499인	14	4	0	4	2	0	2	1	0	0	0	0
	500~999인	16	4	1	2	3	2	2	0	0	1	0	1
	1,000인 이상	18	4	0	1	3	0	3	0	1	1	0	1

구 분	이상온도체접촉	빠짐익사	불균형및무리한동작	화학물질누출접촉	산소결핍	사업내교통사고	사업외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동물상해	기타	분류능
계 (%)	1 (0.12)	10 (1.21)	0 (0.00)	7 (0.85)	4 (0.48)	5 (0.60)	56 (6.76)	0 (0.00)	0 (0.00)	6 (0.72)	0 (0.00)	1 (0.12)
5인 미만	1	4	0	1	2	0	22	0	0	1	0	0
5~9인	0	1	0	1	1	0	10	0	0	1	0	0
10~19인	0	0	0	1	0	0	10	0	0	3	0	0
20~29인	0	0	0	1	0	0	5	0	0	0	0	0
30~49인	0	1	0	1	0	1	2	0	0	0	0	1
50~99인	0	1	0	0	1	1	3	0	0	0	0	0
100~299인	0	3	0	0	0	1	3	0	0	1	0	0
300~499인	0	0	0	0	0	0	1	0	0	0	0	0
500~999인	0	0	0	0	0	0	0	0	0	0	0	0
1,000인 이상	0	0	0	2	0	2	0	0	0	0	0	0

출처: 고용노동부 2021년 산업재해현황분석

3. 산재 취약노동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필요성

○ 앞서 살펴본 상황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산재 예방 및 감독 행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임. 물론 서울시 역시 자체적인 산재예방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으나,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에 맞추어 효과적인 산재예방 정책방안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법상 노동자성과 상관없이 조례 등에 근거해 서울시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산재예방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음. 또한 서울시 및 자치구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기타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효과적인 산재예방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서울시는 시 및 산하기관, 발주용역, 발주공사, 민간위탁기관 등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산재예방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각종 지방세, 인허가 등 행정적 권한을 활용하면 산재예방을 위한 민간부문의 변화를 견인할 수도 있음.

○ 더욱이,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도 산재예방정책 및 사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아래와 같이 마련한 바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됨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3장 타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조례 비교 검토

1.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산재예방조례 제정 현황

○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검토한 결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모두 산재예방, 노동안전보건 사업 지원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었음. 이는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책무 등이 규정된 결과로 판단됨. 산재예방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남도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장 마지막으로 제정했음.

○ 조례의 공포번호, 제·개정일, 시행일 등 세부정보는 『부록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산재예방조례 목록』을 참조하기 바람.

[표 3-1] 광역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조례 제정 현황

지방자치단체명	조례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지방자치단체명	조례명
경기도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강원도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충청북도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충청남도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라북도	전라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라남도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경상북도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경상남도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산재예방조례 제정 현황

○ 조례의 공포번호, 제·개정일, 시행일 등 세부정보는 『부록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산재예방조례 목록』을 참조하기 바람.

(1)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남구, 강서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성동구 등에 산재예방조례가 제정 및 운영되고 있음.

[표 3-2] 서울특별시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조례 제정 현황

지역명	법령명	부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도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주민안전과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자치안전과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재난안전과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에서는 달성군, 북구 등에 산재예방조례가 제정 및 운영되고 있음.

[표 3-3] 대구광역시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조례 제정 현황

지역명	법령명	부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	안전총괄과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3)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에서는 강화군, 옹진군,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등에 산재예방조례가 제정 및 운영되고 있음.

[표 3-4] 인천광역시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조례 제정 현황

지역명	법령명	부서
강화군	강화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옹진군	옹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도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	주민안전과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자치안전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4)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산구, 남구, 북구 등에 산재예방조례가 제정 및 운영되고 있음.

[표 3-5] 광주광역시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조례 제정 현황

지역명	법령명	부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도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5)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에서는 대덕구, 동구, 서구, 중구 등에 산재예방조례가 제정 및 운영되고 있음.

[표 3-6] 대전광역시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조례 제정 현황

지역명	법령명	부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	안전총괄과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안전총괄과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	

지역명	법령명	부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략사업과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6)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에서는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등에 산재예방조례가 제정 및 운영되고 있음.

[표 3-7] 울산광역시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조례 제정 현황

지역명	법령명	부서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전총괄과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안전총괄과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	안전총괄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7) 경기도

○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주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이천시 등에 산재예방조례가 제정 및 운영되고 있음.

[표 3-8] 경기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조례 제정 현황

지역명	법령명	부서
과천시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광주시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수원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흥시	시흥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안산시	안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노동일자리과
안양시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용노동과
양주시	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자리경제과
이천시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기업지원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8) 강원도

○ 강원도에서는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양양군, 원주시, 인제군,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등에 산재예방조례가 제정 및 운영되고 있음.

[표 3-9] 강원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조례 제정 현황

지역명	법령명	부서
고성군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안전교통과
동해시	동해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경제과
삼척시	삼척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과
양양군	양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안전교통과
원주시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기업지원 일자리과

지역명	법령명	부서
인제군	인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춘천시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기업지원과
홍천군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화천군	화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9) 충청북도

○ 충청북도에서는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등에 산재예방조례가 제정 및 운영되고 있음.

[표 3-10] 충청북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조례 제정 현황

지역명	법령명	부서
괴산군	괴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단양군	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보은군	보은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안전건설과
영동군	영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옥천군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경제과
음성군	음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경제과
제천시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증평군	증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경제과
진천군	진천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	
청주시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충주시	충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10) 충청남도

○ 충청남도에서는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홍성군 등에 산재예방조례가 제정 및 운영되고 있음.

[표 3-11] 충청남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조례 제정 현황

지역명	법령명	부서
공주시	공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금산군	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안전총괄과장
논산시	논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부여군	부여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교통과
서산시	서산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안전총괄과
서천군	서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예산군	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천안시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청양군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홍성군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자리지원
충주시	충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11) 전라북도

○ 전라북도에서는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등에 산재예방조례가 제정 및 운영되고 있음.

[표 3-12] 전라북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조례 제정 현황

지역명	법령명	부서
고창군	고창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안전총괄과
남원시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안전재난과 중대재해담당
무주군	무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전재난과
부안군	부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완주군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
익산시	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민안전과
임실군	임실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안전관리과
장수군	장수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정읍시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재난안전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12) 전라남도

○ 전라남도에서는 광양시, 나주시, 신안군, 영암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등에 산재예방조례가 제정 및 운영되고 있음.

[표 3-13] 전라남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조례 제정 현황

지역명	법령명	부서
광양시	광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나주시	나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신안군	신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섬안전개발국 경제유통과
영암군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지역명	법령명	부서
장흥군	장흥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경제산업과
함평군	함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농어촌공동체과
해남군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13) 경상북도

○ 경상북도에서는 고령군, 성주군, 영양군, 의성군, 칠곡군, 포항시 등에 산재예방조례가 제정 및 운영되고 있음.

[표 3-14] 경상북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조례 제정 현황

지역명	법령명	부서
고령군	고령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청년정책담당
성주군	성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양군	영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일자리과 인구일자리팀
의성군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칠곡군	칠곡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	투자유치과
포항시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경제노동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14) 경상남도

○ 경상남도에서는 거창군, 김해시, 남해군, 사천시, 양산시, 창원시, 통영시, 함안군 등에 산재예방조례가 제정 및 운영되고 있음.

[표 3-15] 경상남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조례 제정 현황

지역명	법령명	부서
거창군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김해시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시민안전과
남해군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난안전과
사천시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재난안전과
양산시	양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투자창업단 (기업지원팀)
창원시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안전총괄 담당관
통영시	통영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민안전과
함안군	함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중대재해예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3. 교육청 산재예방조례 제정 현황

○ 조례의 공포번호, 제·개정일, 시행일 등 세부정보는 『부록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산재예방조례 목록』을 참조하기 바람.

○ 교육청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산재예방조례가 제정 및 운영되고 있음.

[표 3-16] 교육청 산재예방조례 제정 현황

지역명	법령명	부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안전총괄과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안전총괄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학교안전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안전복지과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노사정책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4.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 상 주요 정책 및 사업 비교 검토¹⁾

(1) 적용범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조례의 적용범위는 크게 4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되는 조례, 지자체 산하 기관 및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조례, 지정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례, 적용 범위를 미지정한 조례로 나눌 수 있음.

모든 사업장을 적용범위로 한 조례는 부산, 광주, 충북, 제주, 경북, 세종 (6곳)이었음. 지자체 산하 행정기관 및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조례는 서울뿐이었음. 지정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례는 경남, 경기, 전남, 충남, 울산, 전북, 인천, 강원 (8곳)인데, 이들 지자체는 50명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이주노동자, 건설현장, 공공부문 외주 위험 사업장 등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조례에서 정하고 있음. 적용범위를 정하지 않는 조례는 대전, 대구 (2곳)였음.

(2) 사업주의 협력 및 협조

사업주의 협력 및 협조를 조례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부산, 광주, 충남,

1) 이하 4.의 내용은 「이승우, 지역 안전관리 대표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지자체 노동안전조례를 중심으로, 민주노동연구원, 2022」의 분석 내용을 참조 및 인용하였음. 이승우(2022)는 연구보고서 작성 당시에 대구, 세종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만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승우(2022)의 분석 내용에 2개 광역지방자치단체(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를 추가하여 다시 분석했음.

울산, 인천, 충북, 제주, 서울, 경북, 세종 (11곳)이었음. 광주에 안전보건조사관이 사업주의 승인이 있을 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출입한다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3) 노동안전조사관 제도

노동안전조사관은 노동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노동현장의 노동 안전보건조치가 법이나 조례에 따라 이행되는지 지도, 점검하는 사람을 말함. 노동안전조사관제도는 울산에서 가장 먼저 조례에 규정했는데, 공공부문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울산, 충북, 서울 (3곳)에서 노동안전조사관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사업장 또는 노동 현장에서 노동안전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 조사, 개선, 지도, 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노동안전지킴이, 산업안전지킴이, 안전보건지킴이 등 다양하게 조례에서 명명하고 있었음. 경기, 부산, 광주, 충남, 인천, 충북, 제주, 서울, 경북, 대구, 세종 (11곳)에서 이를 조례에 규정했는데, 경기, 광주, 인천, 서울(4곳)만이 그 운영을 조례에서 의무화했음.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거버넌스 구조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문위원회, 예방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등 다양하게 조례에서 명명하고 있음. 경남, 경기, 전남, 광주, 충남, 울산, 인천, 충북, 제주, 서울, 대전, 경북, 대구, 세종 (14곳)에서 이를 조례에 담았는데, 광주, 충북, 제주, 서울, 세종만이 이를 조례에서 의무화했음. 위원 구성에서 노동조합이 참여나 노동조합 추천을 조례에 명시한 곳은 경남, 광주, 울산, 충북, 서울, 경북 (6곳)이었고, 경기, 전남, 대전(3곳)은 노사민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6) 노동안전보건계획

노동안전보건계획은 산재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정책 개발, 안전보건교육, 홍보, 법률 지원 및 상담 등을 담은 계획임. 경남, 경기, 부산, 광주, 울산, 전북, 인천, 강원, 충북, 서울, 대전, 경북, 대구, 세종 (14곳)이 이를 조례에서 규정했는데, 부산, 광주, 울산, 인천, 충북, 서울, 대전, 경북, 대구, 세종(10곳)이 이를 조례에서 의무화하고 있음.

(7) 노동안전보건센터

노동안전보건센터를 조례에서 설치하도록 정한 곳은 경기, 전남, 부산, 광주, 충남, 인천 (6곳)이었는데, 이를 의무화한 곳은 없었음. 부산은 노동안전지킴이의 운영을 센터의 사업에 조례에 포함시키고 있음.

(8) 기업 인증 및 포상

산재예방 및 안전보건 우수 기업에 대한 인증 및 포상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곳은 경남, 경기, 전남, 광주, 충남, 울산, 전북, 인천, 강원, 제주, 대전, 대구 (12 곳)였음. 포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의무화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었음.

(9)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

이는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제도를 말함. 울산, 인천 (2곳)이 이를 조례에서 의무화하고 있음. 이는 울산, 인천이 공단이 많이 입주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10) 보호구 구입 및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구 구입 및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곳은 경남, 제주, 경북 (3곳)이었는데, 이를 의무화한 곳은 없었음.

(11) 노동안전보건컨설팅

사업장 안전보건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를 조례에서 규정한 곳은 경남이 유일했는데,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12) 산재 노동자 치료 지원

산재 노동자 치료 지원 제도를 조례에서 규정한 곳은 경남, 울산, 경북 (3곳)이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이었음. 울산만 이를 의무화하고 있음.

(13) 노동자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인천, 충북, 서울 (3곳)이 노동안전관리체계의 노동자 참여 확대 방안의 수립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음.

(14) 유해작업 도급 금지

부산과 인천 (2곳)이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유해한 작업을 도급 금지하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음.

(15) 중대재해 발생 기업 제재

광주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2년간 지방자치단체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음.

제4장 타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정책 사례 검토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1.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 경기도는 노동기본조례에 따라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노동정책기본계획은 5년 마다 수립되고 이에 근거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경기도 노동기본조례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노동청소년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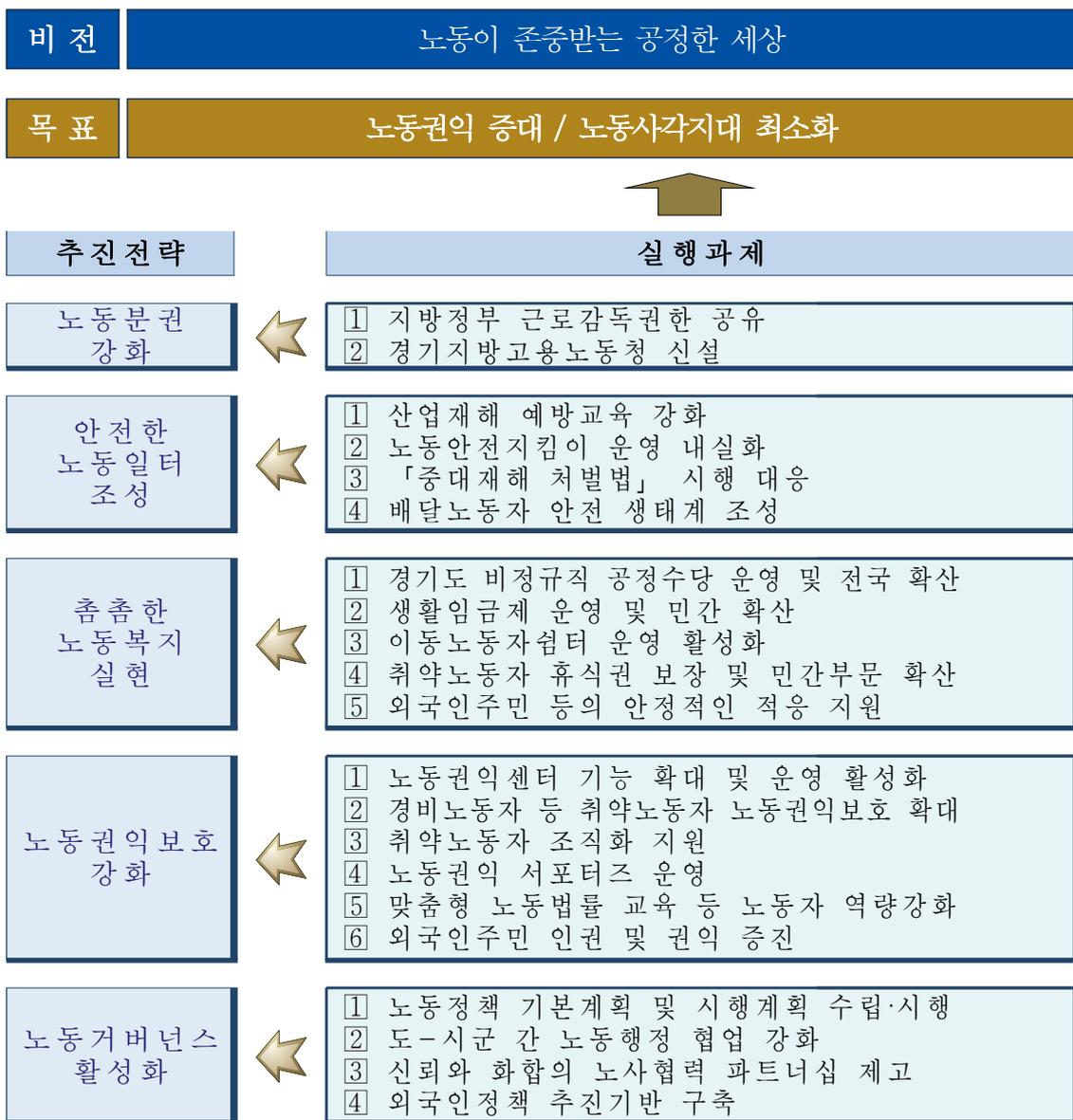
제7조(노동정책 시행계획 및 평가)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22년을 기간으로 하는 제1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했으며, 현재는 제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중임. 제1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은 민선 6기 집행부에서 수립했으나 실제 추진 및 집행은 민선 7기 집행부에서 이뤄졌음.

○ 민선 7기 집행부는 민선 6기 집행부에서 수립한 계획을 수정·보완하였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비전으로 하여 「노동권의 증대」와 「노동사각지대 최소화」를 정책목표로 제시했음. 또한 이를 위해 「노동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보호 강화」, 「노동거버넌스 활성화」를 5대 추진전략으로 수립했음.

[그림 4-1] 노동국 비전 및 추진전략



출처: 경기도 노동국(2022), 경기도의회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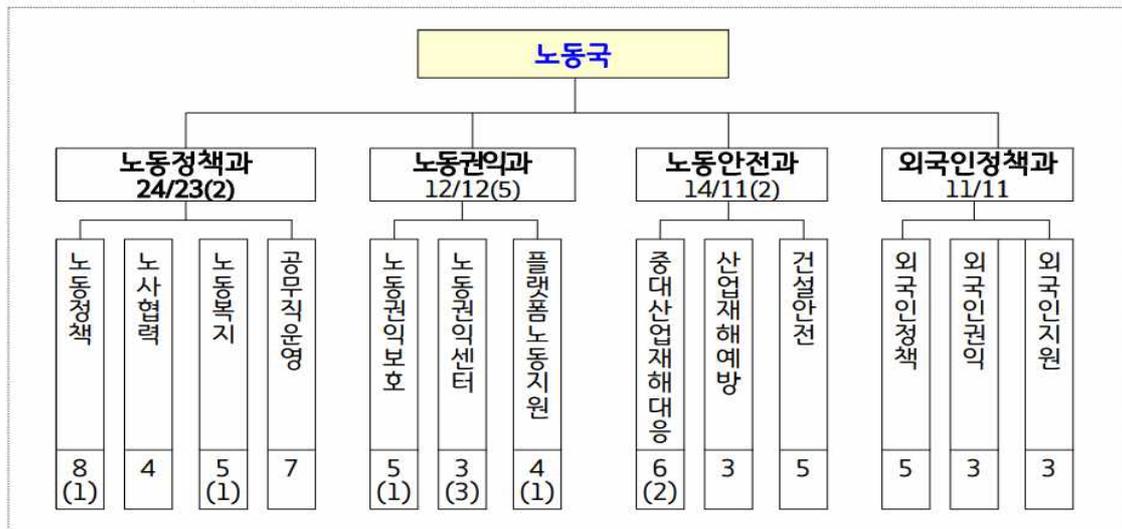
○ 5대 추진전략 중 「안전한 노동일터」 추진 전략의 주요 실행과제로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강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내실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 배달노동자 안전 생태계 조성 등을 상정하고 있음.

○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추진 전략 중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활성화, 취약노동자 휴식권 보장 및 민간부문 확산, 「노동권익보호 강화」 추진 전략 중 경비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노동권익보호 확대 등도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 및 산재예방과 관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2. 경기도 산재예방정책 집행 조직 현황

○ 경기도 노동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은 노동국 산하의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노동안전과, 외국인정책과 4개과임. 이 중 산재예방정책 및 사업을 수립, 집행하는 부서는 노동안전과로 산하에 중대산업재해대응팀, 산업재해예방팀, 건설안전팀 3개팀이 편제되어 있음.

[그림 4-2] 경기도 노동국의 구성



주) 괄호는 시간선택임기제 및 공무원직

출처: 경기도 노동국 2023. 2. 경기도의회 업무보고서

○ 노동안전과의 주요 업무는 아래 표와 같음. 취약노동자 산재예방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업들은 노동안전과에서만 추진되고 있지는 않으며,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함께 추진되고 있음.

[표 4-1] 경기도 노동안전과의 주요 업무

1. 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 보상 지원 강화 및 예방·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5. 감정노동자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7. 건설안전에 관한 사항 총괄
8. 부실공사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3. 경기도 산재예방정책 및 주요 사업

(1) 근로감독 지방정부 공유

- 소규모 영세사업장, 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의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음.
-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와 근로감독권한을 부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산재예방감독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입법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국회를 통한 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중대산업재해 예방추진체계 구축

- 경기도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였으며, 노동국 내에 노동안전과를 신설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하였음.
- 참고로, 경기도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는 경기도지사이며, 안전보건관리 총괄관리자는 노동국장임.

○ 산업재해예방 부서별 협의체 구축

- 경기도는 효과적인 산재예방정책의 마련,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경기주택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부서별 협의체를 운영함.

- 이를 통해 각 부서별 산재예방 단위사업을 선정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함.

○ 노동안전지킴이

- 경기도 산업해재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근거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함.
- 노동안전지킴이는 2020년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시군 단위별로 활동하면서 건설공사 등 유해위험 현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찾아가는 산재예방교육

-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산재예방교육을 추진함.
-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업종별 맞춤형 교육, 사고 유형별 VR체험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추진함.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및 안전교육

- 경기도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배달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함. 2021년에는 노동자 부담분에 대한 지원금만 지급했으나, 2022년에는 사업주 부담분에 대한 지원금도 지급함.
-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는 특화 교육을 실시함.

○ 아파트 청소·경비노동자 및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경기도는 아파트 청소·경비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함.
-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는 법령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함.
- 경기도는 아파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외에도 대학, 산업단지,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의 휴게시설에 대해서도 개선 사업을 진행함.

○ 이동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휴게공간 조성

- 경기도는 고정된 근무 장소가 없는 이동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쉼터 설치를 추진함.
- 노동자의 접근성, 이용도 제고 등을 위해 거점쉼터, 소규모 점포형 쉼터, 부스형 쉼터, 캐노피형의 간이형 쉼터 등 다양한 유형의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면 결과 통보일까지의 격리기간 동안 금전적 손실이 큰 경우가 많음. 또한 백신접종 후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 때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격리하거

나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을 겪는 취약노동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소득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함.

○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는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이들에 대한 휴가비 지원 사업을 시행함.
- 휴가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취약노동자를 위해 획일적인 휴가비 지원에서 벗어나 여가용품 구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 경기도는 노동국 내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규조직으로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여 산업재해를 비롯한 다양한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 정규조직인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시군단위 상담소, 지원센터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

- 경기도는 외국이 노동자가 밀집되어 있는 안산시에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산업재해를 포함한 다양한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정책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감정노동자, 해고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 경기도는 감정노동자, 해고노동자의 심리적 문제를 상담하기 위한 심리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시군 단위 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병원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기초상담-심층상담-치료까지 이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민·관 거버넌스 구축

- 경기도는 노동정책의 개발, 수립 등을 자문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동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 노동정책자문위원회 산재분과에서는 경기도 내 다양한 산재문제를 검토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자문함.

제5장 해외 산재예방정책 사례 검토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1.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단위 산재예방정책 집행 구조의 특징

○ 일본에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정부부처가 후생노동성임. 후생노동성의 행정조직은 지방조직으로 도도부현 단위의 노동국이 있고 그 산하의 노동기준감독서, 공공직업안정소 등이 운영됨. 따라서 노동행정조직 체계는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본부 및 각 지청 체계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일본의 지방 노동행정조직의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후생노동성 중심의 일원화된 관리 체계가 아니었음.

○ 원래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노동행정조직은 후생노동성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이뤄지는 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 및 지방사무관제도를 통해 간접적인 지휘감독이 이뤄지는 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음. 그러다가 2000. 4. 시행된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지방분권일괄법)」에 의해 기관위임사무 및 지방사무관제도가 폐지되면서 후생노동성 중심의 일원화된 관리 체계가 운영되게 된 것임²⁾.

○ 이에, 일본의 도도부현 단위의 산재예방정책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별 상황, 특성 등을 반영한 정책 및 사업들이 많음. 즉 도도부현 노동국은 중앙정부의

2) 고혜원, 지방노동행정조직과 기능의 비교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4호, 2006, 241-242쪽 참조

획일화된 정책의 집행 단위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단위별 정책 및 사업 수립 단위로서도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 및 집행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뿐만 아니라 도도부현 노동국 단위에서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도 함께 검토하고자 함.

2. 오사카(大阪) 노동국의 「리스크'제로'오사카 추진운동」의 취약노동자 산재예방정책 사례

○ 리스크 '제로' 오사카 추진운동은 “재해 제로·질병 제로 오사카”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 산재예방 및 감소 운동임.

○ 이 운동은 2018년에 수립된 「오사카 노동국 제 13차 산재방지추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공장, 현장, 사무소, 점포 등 각 직장에 산재한 유해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설비의 개선, 작업절차의 수정, 안전위생교육의 실시 등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이 운동에서는 고연령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등을 신체 기능의 저하나 작업에 미숙한 취약노동자로 상정하여 이들에 대한 채용시 교육이나 위험 체감 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건설업에서는 현장 투입 전에 현장에 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입직 1년 미만의 경험이 적은 노동자에 대한 이른바 ‘안전작업 스킬 업’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도쿄(東京) 노동국 제13차 노동재해 방지계획의 취약노동자 산재 예방정책 사례

○ 도쿄 노동국은 제13차 노동재해 방지계획을 통해 고연령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산재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고연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자 개인의 전도, 동작의 반동·무리한 동작 등 작업행동에 기인해 발생하는 재해, 즉 행동재해를 입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신체기능의 저하를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신체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운동의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타 업종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소매업이나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입직 1년 미만 노동자의 산재 감소를 위해 고용시 안전위생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최근 건설 수요의 증가에 수반해 기능실습생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 업에서 증가하고 있음.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 건설 현장 상황이나 일본어 능력이 미숙하여 산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위생교육의 실시, 산재방지를 위한 일본어교육, 산재방지 등에 관한 표지 게시, 건강관리의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는 현장 관리자 등에 대한 지도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음.

4. 가나가와(神奈川)현 산재방지 중점대책의 취약노동자 산재예방정책 사례

○ 가나가와현은 고령화, 고용형태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고령 노동자, 비정규 고용노동자, 파견 노동자, 청년 노동자, 미숙련 노동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음.

○ 가나가와현은 산재 예방을 위해 이들 노동자들이 산재를 유발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위험의 가시화」를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상정하고 있음.

○ 고령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직장이나 고령 노동자의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 계단 개조, 손잡이 설치, 필요 조명의 확보 등 직장환경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고연령 노동자를 배려한 직장개선 매뉴얼」의 보급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재해사례의 게시, 모의체험설비의 설치 등을 통해 「위험의 가시화」를 추진하고 있음.

○ 파트타임어·아르바이트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 고용시 교육을 강화하고 재해사례의 게시, 모의체험설비의 설치 등을 통해 「위험의 가시화」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후생노동성의 「과건노동자에 관한 노동조건 및 안전위생의 확보에 대하여」에 기초해 과건 노동자에 대한 안전위생교육의 실시, 과건회사 사업자 및 과견처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5. 후쿠오카(福岡)시 공공 공사 산재예방 추진 사례

○ 후쿠오카시는 2022년 공공 공사 산재 감소를 위해 4개 중점 항목에 기반한 안전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음.

○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목표가 아닌 구체적이고 명료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였다는 점이 눈여겨 볼만한 지점임. 참고로, 최근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료한 목표 수립 및 집행이 산재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견해가 제기된 바 있음.

[표 5-1] 후쿠오카시 공공 공사 안전추진계획 4대 중점 목표

- 끼임·말림사고의 방지
- 매설물 등 손상사고의 방지
- 추락·전락사고의 방지
- 가공선·신호 등 손상

출처: 2022년도 후쿠오카(福岡)시 공공 공사 안전추진계획

○ 후쿠오카시는 시공자에 의해 실시되는 안전훈련, 재해방지협의회 등에 시청 직원이 직접 참가하여 안전훈련 등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또한 시청 공사담당부서가 안전패트롤을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 안전대책 등을 점검하고 지도하고 있음. 공사 가동률이 높은 시기, 연휴 전이나 연말 등에 연 4회 안전패트롤을 실시하고 있음. 필요한 경우,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감독서나 건설업협회 등과 합동안전 패트롤을 실시하기도 함.

- 후쿠오카시는 재발방지대책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공사담당부서의 감독원들로 구성됨. 재발방지대책 워킹그룹은 공사 재개에 앞서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하여 적용함.

- 또한 다른 공사에서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전파하고 안전패트롤의 중점체크 항목에 이를 반영함.

- 또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보를 DB화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경향이나 원인 등을 분석하여 대책 마련에 활용함.

6. 가고시마(鹿兒島)현청의 총괄안전위행위원회 및 관계 부서간 산재 예방 네트워크 구축 사례

- 가고시마현은 인구 164만명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총 24,800명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음.
- 가고시마현청은 소속 직원들의 안전보건을 위해 본청 위생위원회 외에 각 사업장마다 24개 위생위원회 및 안전위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 전체 현청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총괄 안전위생위원회가 설치되어 연 2회, 전체 현청의 안전위생관리에 관한 과제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음.
- 현립 병원국에는 현내 5개 병원에 위생위원회가 설치되어 각각의 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안전위생관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3개의 보건위생위원회도 월 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 또한 「마음건강증진 전문부회」를 설치하여 현이 책정한 「마음건강증진계획」에 관한 진척 상황과 향후의 운영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각 지역, 각 안전위생위원회 등에서 적절한 안전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매년도 초에 「복리후생담당자회의」를 개최하여, 안전위생을 논의하고 각 지역의 담당자간 교류를 통해 현 전체의 안전위생에 관한 대응 수준을 높이고 있음.

7. 나가노(長野)시청의 재해 사례의 공유와 리스크 어세스먼트(Risk Assessment) 추진 사례

- 나가노시는 인구 384,000명의 지방자치단체로 2,488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음.
- 나가노시청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보고서를 재해를 입은 직원이 근무하는 소속의 장이 제출하도록 함. 보고서는 시청 전체에 공유되고, 재해 사례는 일람표로 정리되어 총괄안전위생관리자로부터 각 부서장에게 주지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됨.
- 청소센터의 직장안전위생위원회는 2006년도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안전위생법에 의한 리스크 어세스먼트(Risk Assessment)를 실시하고 있음.
- 「나가노(長野)시 청소센터 리스크어세스먼트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공유시키는 한편, 직원들이 참여하여 위험성 또는 유해성 (리스크)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 절차를 작성함.
- 리스크 예측, 감소 조치의 검토, 실시, 기록 등 1년 동안의 활동을 연말에 확인, 재검토 하고, 재검토에 의해 도출된 과제는 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하여 다음 연도의 안전위생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8. 가와구치(川口)시청 멘탈헬스 진단 및 조직분석 실시 사례

○ 가와구치시는 인구 59만명의 지방자치단체로, 4,150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임.

○ 가와구치시는 2010년부터 직원 전원에 대해 멘탈헬스 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2010년부터 조직분석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함으로써, 조직의 개선 지점을 찾고 직원들의 스트레스, 갈등 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직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진단 전에는 전체 계장을 대상으로 한 기본 연수를 실시하고, 진단 후에는 전체 부서장에게 설명회를 겸한 관리자 연수를 실시함. 높은 스트레스가 나타난 부서에는 개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음.

○ 멘탈헬스 진단 비용은 2010년에는 시청과 직원상조회가 반반씩 경비를 부담했지만, 2011년부터는 전액 시청이 부담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가와구치시의 멘탈헬스 문제에 따른 장기 병휴직자 비율은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제6장 결론 : 서울시 산재예방정책 수립 방안 검토

1. 서울시 산재예방정책의 기본 방향

(1) 산재취약노동자 보호를 중심으로

○ 서울시가 산재예방정책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고용노동부와의 정책 및 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임. 노동정책 분야 중에서 산재예방정책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정책 분야임.

○ 따라서 고용노동부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예산과 인력의 중복을 피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정책 효과의 최대화를 꾀해야 함.

○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시 소재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는 고용노동부 예방감독행정 및 산재예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이들 산재취약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정책을 발굴, 수립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

(2) 서울시 공공부문 중대산업재해 감소를 중심으로

○ 서울시는 사용자로서 서울시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 공무직 직원 등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이 있음. 또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서울시 발주 공사, 용역, 민간위탁 등 영역에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이 있음.

○ 이는 단순히 도덕적,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아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에 따라 이들 영역에 대한 서울시의 법적 책임이 더 명확해지고 더 커지고 있음.

○ 서울시 조직 및 직영 기관은 물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서울시 발주 공사, 용역, 민간위탁 등 영역에서는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음. 따라서 이들 서울시 공공부문에서부터 중대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마련, 집행해야 함.

(3) 서울시가 지닌 권한의 적극적 활용을 중심으로

○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동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국한하여 산재예방정책 및 사업을 수립, 집행하려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을 벗어나지 못하면 현실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 담당부서가 민간 사업체, 민간 공사 현장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임.

○ 따라서 다른 정책 분야의 법률, 조례가 부여한 서울시의 권한을 산재예방정책 및 사업의 집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정책 영역에서는 법적 권한이 거의 없지만 소방, 건축, 지방세, 식품 등 인허가 등에 있어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음. 다른 정책 분야의 법률, 조례가 부여한 서울시의 권한을 산재예방정책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민간부문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

(4) 안정적 법제도 환경 구축을 중심으로

○ 중앙정부, 경기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재취약노동자에 대한 산재예방정책은 주로 재정적, 인적 지원정책에 머무르고 있음. 이 같은 지원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지원이 중단되면 곧바로 과거로 회귀하는 한계가 있음.

○ 서울시 산재예방정책에는 단순한 재정적, 인적 지원을 넘어 산재취약노동자가 산재예방을 위한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어야 함.

(5)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 산재예방 및 감소는 일회적인 사업이나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실현하기 힘든 정책 목표임. 더욱이, 산재취약노동자의 산재예방은 이들이 처한 노동환경 및 고

용구조가 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산재예방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음.

○ 서울시 산재예방정책은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함.

○ 또한 정책을 일관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 및 전담전문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 유지,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6) 현장노동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 효과적인 산재예방 정책의 마련을 위해서는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위험에 직면하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 그러나 소규모 영세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산재취약노동자는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아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나 조직을 찾기도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한편, 권한이 부족한 지방정부가 산재예방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권한, 전문성 등을 지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임. 현재에도 유관기관 간 회의나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현재 수준보다 공식성을 높이고 협업수준을 높일 수 있는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야 함.

○ 앞서 살펴본 문제의식에 근거해, 서울시, 전문가, 현장노동자, 유관기관, 노동

조합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마련 및 집행을 위한 유기적인 협의, 결정을 위한 산재예방정책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함.

2. “(가칭) 일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산재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 제정

○ 사업 목적

- 산재예방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산재취약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정책, 조직,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산재취약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한 조직 구축,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의 근거 마련
- 산재취약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성과의 축적을 위한 기반 마련

○ 사업 내용

-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산재취약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의 근거들을 담은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야 함.
- 산재취약노동자 산재예방정책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존 조례 개정 방안보다는 “(가칭) 일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산재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 제정안에서는 새로운 사업 예산 및 인력의 확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위해 산재취약노동자 산재예방정책 추진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수립하고 각 단계별 목표와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

도록 규정함.

- 상기 단기 과제외의 경우, 1년 단위로 수립하여 매년도 전년도 추진 성과를 평가, 점검하여 차년도 목표 및 추진과제를 수정,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함.

○ 기대 효과

- 새롭게 제정되는 “(가칭) 일하는 시민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조례”를 통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산재취약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서울시 산재취약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 사업, 예산 등의 안정적 근거 및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 및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3.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산재예방점검회의” 구성 및 운영

○ 사업 목적

- 산재취약노동자 산재예방정책 및 사업의 효과적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 서울시 공공부문 산재예방을 위한 부서별 단위과제를 수립, 점검함으로써 서울시 공공부문 산재의 효과적 감소 추진.
- 각 부서별 고유 사업과 산재예방정책의 연계를 통해 산재취약노동자 산재의 효과적 감소 추진.

○ 사업 내용

- 서울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시장, 담당 부서³⁾, 산하 공공기관 담당 부서, 발주공사 담당부서, 민간위탁 담당 부서, 민간부문 관련 사업부서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산재예방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함.
- 산재예방점검회의를 통해 산재취약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의 계획, 추진상황 점검, 평가 등을 서울시장이 직접 점검하도록 함.
-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담당 부서, 발주공사 담당부서, 민간위탁 담당 부서별 산재예방을 위한 단위과제를 수립하도록 하고 그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함.

3) 현재 담당부서는 노동정책담당관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산재예방정책 수립 및 집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과 단위 전담부서”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음.

-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고유 사업 중 산재취약노동자의 산재예방과 연계할 수 있는 점검 권한, 인센티브, 인허가조건 등을 도출하여, 산재 감소를 위한 부서별 단위과제를 수립하도록 하고 그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함.

○ 기대 효과

- 시장이 주재하는 컨트롤타워와 부서간 협의 체계 마련으로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 집행, 부서간 원활한 협업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노동정책담당관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사업부서, 민간부문 사업부서가 함께 단위과제를 수립, 추진, 점검함으로써 산재취약노동자의 실질적인 산재 감소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됨.

4. “산재취약노동자 산재예방정책 자문위원회” 및 “유관기관, 지역별, 직종별 정책 협의체”구성

○ 사업 목적

- 산재예방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 현장성 반영.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 사업 내용

- 산재취약노동자 산재예방과 관련한 전문가, 노동조합, 현장 노동자 등이 참여하여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정책을 심의, 자문하는 “산재취약노동자 산재예방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근로감독 권한, 노동행정권한 등이 부족한 서울시의 법률상, 행정상 한계를 극복하도록 함.
-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직종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현안을 빠르게 정책, 사업에 반영하고, 산재 발생시 빠르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기대 효과

-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못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완하고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좁힐 것으로 기대됨.
- 권한을 보유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단순 감시자 역할 뿐만 아니라 집행 권한까지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및 사업 반영을 통해 시의적절한 정책, 사업 수립이 가능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 사후 대처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판단됨.

5. “건강하고 안전한 플랫폼 노동 생태계 만들기”프로젝트 추진

○ 사업 목적

-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의 노동환경 개선.
- 건강하고 안전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
- 휴식권 보장을 통한 플랫폼 노동자 건강 증진.
-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한 플랫폼 노동자의 보상받을 권리 강화
- 일상적 건강 관리를 통한 플랫폼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

○ 사업 내용

- 휴게시설 지원사업,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 등과 연계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녹지 쉼터 등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 상담, 조직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
- 기존 플랫폼노동자 휴게시설의 큰 문제점으로 낮은 접근성과 이용률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휴게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장소 및 휴게시설 유형의 선정이 필요함.
- 휴게시설에서 오토바이, 차량, 전기자전거 등을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정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사고 발생을 낮추고 휴게시설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함.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비서비스는 서울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도 추진할 수 있고, 플랫폼 업체와의 MOU나 대기업 사회적 공헌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할 수도 있음.

- 서울시 공공병원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물리치료, 상담, 혈압 등 건강관리, MSDS,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한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도록 함.

○ 기대 효과

- 플랫폼 노동자의 사고발생 가능성, 직업병 발생 가능성을 사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재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
-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삶의 질과 건강 개선에 기여함.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접근성 높은 행정서비스를 통해 정책 집행 효과를 높일 수 있음.

6. 소규모 영세 사업체 산재예방을 위한 “상시 지원 시스템”과 “소규모 사업장 서울형 산재예방 인증”프로그램 구축

○ 사업 목적

-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호구, 휴게시설, 건강관리,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 및 산재 발생 가능성을 낮춤.
- 서울시 산재예방정책에 동참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인증과 포상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산재예방에 동참하도록 유도.

○ 사업 내용

-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마스크,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방한장비 등 안전보호구 지원 및 보급을 통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사고 및 질병 발생 가능성을 낮추도록 함.
- 휴게시설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못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조성 및 휴게시설 내 에어컨, 선풍기, 공기청정기, 장관, 도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함.
- 서울시 공공병원에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건강 상담 및 정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함.
-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적절한 안전설비 및 장치 설치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서울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특화된 노동안전보건 인증기준에 기반해 “소규

모 사업장 서울형 산재예방 인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금전적 포상 및 지원 방안, 서울시 인허가시 인센티브, 서울시 발주용역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함.

○ 기대 효과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 및 산재예방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산재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산재예방에 동참하여 사업장 내의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7.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과 단위 전담부서”설치

○ 사업 목적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강화를 통한 서울시 공공부문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추진
- 민간부문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한 민간부문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추진

○ 사업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상 지방자치단체 역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지게 됨.
- 따라서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동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과 단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과 단위 전담 부서의 역할, 책임,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전담 부서를 통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민간부문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컨설팅 및 재정 지원 방안,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기획, 추진하도록 함.

○ 기대 효과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집행체계 마련, 역할·책임·기능의 명확화 등으로 공공부문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음.
- 민간부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

8. 산재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 및 자치구 노동자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

○ 사업 목적

- 서울시 및 자치구 노동자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재평가하여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특화된 산재예방사업을 강화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산재 발생 특성을 반영해 산재예방사업 강화 및 전문 인력 보강
- 감정노동, 스트레스 등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기능 강화
- 산재취약노동자에 대한 산재예방 교육프로그램 강화

○ 사업 내용

- 기존 노동자지원센터는 주로 산재 피해 노동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음. 이를 넘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및 지도·점검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을 보강하도록 함.
-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 교육참여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험형 교육 등 교육 방법을 다양화하고 교육 참여시 소득손실을 보전하는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하도록 함.
-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 및 예산 측면에서 서울시 산재취약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음.

- 이에, 서울시 및 자치구 노동자지원센터에 감정노동 및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이 경우,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전체 노동자지원센터의 상담 및 지원 조직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역할 및 기능으로 재편될 필요성 있음.

- 서울시 및 자치구 노동자지원센터에서 산재예방 및 보상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 환경, 작업 특성 등에 기반한 산재예방교육이 미흡함. 이에, 소규모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성에 기반한 교육 내용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산재취약노동자의 실질적인 산재 감소.

- 산재취약노동자에 대한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한 노동자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내실화.

9. 플랫폼 노동자 표준 계약서 및 표준 근로조건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 사업 목적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법상 권리 보호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갑질 피해 최소화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노동자 및 사업주의 올바른 인식 제고

○ 사업 내용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법이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으나, 노동자와 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노동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민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등에서 정한 보호를 받고 있음. 그러나 노동자와 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노동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담은 표준 계약서 및 표준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도록 함.

- 이미 정부부처, 유관단체 등에서 표준계약서, 표준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이 개발, 보급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음.
- 한편, 표준 계약서 체결을 통해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와 동일하게 일하는 이른바 위장자영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음.

○ 기대 효과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노동 조건 및 환경 조성.
-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의 주요 내용을 노동자, 사업주 등에게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참고 문헌】

- 고혜원, 지방노동행정조직과 기능의 비교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4호, 2006
- 김경하·정석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특성 및 산재보험지원 활성화 방안, 근로복지연구원, 2022
- 김준영 외,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한국고용정보원, 2021
- 박정선 외, 영세소규모 제조업체와 종사 근로자의 산업보건학적 취약성 원인과 대책, 2016
- 박정우 외, 플랫폼 배달기사 산재안전망 경험 비교와 개선방안, 서울노동권익센터, 2022
- 백종배 외, 중소기업 산재예방을 위한 교육 등 개선방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 서용운,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지원방안, 한국노총 산재예방 토론회 자료집, 2022
- 오종은·김영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자 보호-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근로복지연구원, 2019
- 이승우, 지역 안전관리 대표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지자체 노동안전조례를 중심으로, 2022
- 이승현 외, 플랫폼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보건 체계 개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 장성록 외,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 방안 마련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0
- 정승호 외, 신산업 노동자 보호 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0

정홍준·장희은,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 종사자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8

주창엽 외, 주요 선진국의 산재예방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비교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지자체 노동자 안전을 위한 우선 과제 토론회 자료집, 2022

최은숙 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8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 자료집, 2021

한인상·신동윤,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9

【참고 자료】

가나가와(神奈川)현 산재방지 중점 대책 (가나가와 노동국)
고령노동자의 안전과 건강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책정에 관하여 (후생노동성)
고용노동부 2021.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고용노동부 2021년 산업재해현황분석
고용노동부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발표 자료
고용노동부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 자료
고용노동부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자료
노동자의 마음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지침 (히로시마시 히로시마현 노동국)
리스크 “제로” 오사카 추진운동 (오사카 노동국)
제13차 도쿄(東京)노동국 노동재해 방지계획 (도쿄 노동국)
직장에서의 건강관리 서포트 가이드 (가고시마현)
파견노동자에 관한 노동조건 및 안전위생의 확보에 대하여 (후생노동성)
후쿠오카(福岡)시 공공공사 안전추진계획 (후쿠오카시 공공공사 안전추진위원회)
2021년도 노동안전위생 행정의 과제 (쿄토 노동국 노동기준부)

【부록】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산재예방조례 목록

1.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6. 30] [조례 제 4922호, 2022. 6. 30, 전부개정]
2. 강화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0] [조례 제2734호, 2022. 12. 20, 제정]
3.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22. 11. 30] [조례 제2740호, 2022. 11. 30, 제정]
4.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0. 1. 13] [조례 제 6445호, 2020. 1. 13, 일부개정]
5.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3. 1. 2] [조례 제5293호, 2022. 12. 29, 일부개정]
6.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1. 12. 30] [조례 제4603호, 2021. 12. 30, 제정]
7. 고령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3. 2. 23] [조례 제 2432호, 2023. 2. 23, 제정]
8.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30] [조례 제2657호, 2022. 12. 30, 제정]
9. 고창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8] [조례 제2661호, 2022. 12. 28, 제정]
10. 공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9. 27] [조례 제1550호, 2022. 9. 27, 제정]
11.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3] [조례

- 제1874호, 2022. 12. 23, 제정]
12. 광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0. 17] [조례 제1949호, 2022. 10. 17, 제정]
 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1. 11] [조례 제1728호, 2022. 11. 11, 제정]
 14. 광주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 1] [조례 제5525호, 2020. 9. 25, 제정]
 15. 광주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8] [조례 제1432호, 2022. 12. 28, 제정]
 16. 광주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7] [조례 제1800호, 2022. 12. 27, 제정]
 17.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 11] [조례 제1405호, 2022. 11. 11, 제정]
 18. 괴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12] [조례 제2711호, 2022. 12. 12, 제정]
 19. 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3. 1. 5] [조례 제2428호, 2023. 1. 5, 제정]
 20.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시행 2022. 10. 21] [조례 제1857호, 2022. 10. 21, 제정]
 21. 나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1. 3] [조례 제1888호, 2022. 11. 3, 제정]
 22.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14] [조례 제1851호, 2022. 12. 14, 제정]

23.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2. 14] [조례 제2662호, 2023. 2. 14, 제정]
24. 논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5. 2] [조례 제1581호, 2022. 5. 2, 제정]
25. 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8. 19] [조례 제2676호, 2022. 8. 19, 제정]
26.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2. 30] [조례 제5539호, 2020. 12. 30, 제정]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 [시행 2022. 12. 30] [조례 제2877호, 2022. 12. 30, 제정]
28.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 10] [조례 제1598호, 2022. 11. 10, 제정]
29.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시행 2022. 10. 31] [조례 제5872호, 2022. 10. 31, 제정]
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 [시행 2021. 12. 17] [조례 제1571호, 2021. 12. 17, 제정]
31.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3. 2. 17] [조례 제1643호, 2023. 2. 17, 제정]
32.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0. 8] [조례 제1518호, 2021. 10. 8, 제정]
33.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0. 14] [조례 제5895호, 2022. 10. 14, 전부개정]
34. 대전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0.

- 18] [조례 제1921호, 2022. 10. 18, 제정]
35.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27] [조례 제1449호, 2021. 12. 27, 제정]
36. 동해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3. 3. 3] [조례 제2301호, 2023. 3. 3, 제정]
37. 무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 8] [조례 제2618호, 2023. 3. 8, 제정]
38. 보은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9] [조례 제2788호, 2022. 12. 9, 제정]
39.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2. 7. 6] [조례 제6707호, 2022. 7. 6, 일부개정]
40. 부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1. 16] [조례 제2720호, 2022. 11. 16, 제정]
41. 부여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16] [조례 제2855호, 2022. 12. 16, 제정]
42.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3. 3. 16] [조례 제1914호, 2023. 3. 16, 제정]
43. 삼척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2. 24] [조례 제1509호, 2023. 2. 24, 제정]
44. 서산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시행 2023. 1. 31] [조례 제1776호, 2023. 1. 31, 제정]
4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3] [조례 제1757호, 2022. 12. 23, 제정]

46.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8] [조례 제1519호, 2022. 12. 28, 제정]
47.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7] [조례 제1320호, 2022. 12. 27, 제정]
48.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4. 20] [조례 제1241호, 2022. 4. 20, 제정]
49.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9] [조례 제1680호, 2022. 12. 29, 제정]
50.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9] [조례 제1666호, 2022. 12. 29, 전부개정]
51.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1. 9. 30] [조례 제8142호, 2021. 9. 30, 일부개정]
52.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1. 12. 30] [조례 제1488호, 2021. 12. 30, 제정]
53. 서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9] [조례 제2814호, 2022. 12. 9, 제정]
54.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4. 11] [조례 제3762호, 2022. 4. 11, 제정]
55. 성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 3] [조례 제2457호, 2022. 11. 3, 제정]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20] [조례 제1965호, 2022. 4. 20, 제정]
57.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시행 2023. 3. 6] [조례 제2090호, 2023.

3. 6, 제정]

- 58.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7. 8] [조례 제 4304호, 2022. 7. 8, 제정]
- 59. 시흥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15] [조례 제2177호, 2022. 12. 15, 제정]
- 60. 신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28] [조례 제2568호, 2022. 12. 28, 제정]
- 61. 안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1. 14] [조례 제2659호, 2022. 11. 14, 제정]
- 62.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30] [조례 제3465호, 2022. 12. 30, 제정]
- 63. 양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15] [조례 제1896호, 2022. 12. 15, 제정]
- 64. 양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3. 2. 28] [조례 제2867호, 2023. 2. 28, 제정]
- 65. 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1. 7] [조례 제1245호, 2022. 11. 7, 제정]
- 66. 영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6] [조례 제2961호, 2022. 12. 26, 제정]
- 67.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15] [조례 제2664호, 2022. 12. 15, 제정]
- 68. 영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23] [조례 제2362호, 2022. 12. 23, 제정]

69. 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0. 31] [조례 제2785호, 2022. 10. 31, 제정]
70.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30] [조례 제3139호, 2022. 12. 30, 제정]
71. 용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2. 10. 26] [조례 제2452호, 2022. 10. 26, 제정]
72.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2] [조례 제3047호, 2022. 12. 22, 제정]
73. 울산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29] [조례 제1143호, 2022. 12. 29, 제정]
7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 3] [조례 제1273호, 2022. 11. 3, 제정]
75.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0. 12. 29] [조례 제2312호, 2020. 12. 29, 제정]
76.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시행 2022. 12. 15] [조례 제1429호, 2022. 12. 15, 제정]
77.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6] [조례 제1220호, 2022. 12. 26, 제정]
78.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30] [조례 제2146호, 2022. 12. 30, 제정]
79. 음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1. 7] [조례 제2845호, 2022. 11. 7, 제정]
80.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2] [조례

제2860호, 2022. 12. 22, 제정]

81. 인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8] [조례 제1895호, 2022. 12. 28, 제정]

82. 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30] [조례 제2332호, 2022. 12. 30, 제정]

83. 인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2] [조례 제2663호, 2022. 12. 22, 제정]

84.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2. 10. 21] [조례 제1439호, 2022. 10. 21, 전부개정]

85. 인천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 [시행 2022. 10. 31] [조례 제1378호, 2022. 10. 31, 제정]

8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2. 11. 14] [조례 제1767호, 2022. 11. 14, 제정]

87.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2. 12. 30] [조례 제6931호, 2022. 12. 30, 일부개정]

88. 임실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30] [조례 제2659호, 2022. 12. 30, 제정]

89. 장수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6] [조례 제2644호, 2022. 12. 26, 제정]

90. 장흥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3] [조례 제2631호, 2022. 12. 23, 제정]

91.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0. 5. 21] [조례 제5063호, 2020. 5. 21, 제정]

92. 전라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1. 2. 19] [조례 제4883호, 2021. 2. 19, 제정]
93.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15] [조례 제1983호, 2022. 12. 15, 제정]
9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 1] [조례 제3335호, 2023. 1. 3, 타법개정]
95.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1. 19] [조례 제2901호, 2021. 8. 9, 제정]
96.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16] [조례 제1922호, 2022. 12. 16, 제정]
97. 증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0. 28] [조례 제1055호, 2022. 10. 28, 제정]
98. 진천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2. 10. 4] [조례 제2979호, 2022. 10. 4, 제정]
99.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1. 11. 15] [조례 제1557호, 2021. 11. 15, 제정]
100.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0. 11] [조례 제2384호, 2022. 10. 11, 제정]
101.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1] [조례 제2673호, 2022. 12. 21, 제정]
102.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1. 4] [조례 제1321호, 2022. 11. 4, 제정]
103.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9. 28] [조례

제1725호, 2022. 9. 28, 제정]

104. 충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5. 6] [조례 제2090호, 2022. 5. 6, 제정]

105.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8. 4] [조례 제5234호, 2022. 7. 14, 일부개정]

106. 충청북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 9] [조례 제4534호, 2021. 4. 9, 제정]

107.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1. 11. 19] [조례 제4606호, 2021. 8. 6, 제정]

108. 칠곡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1. 11] [조례 제2675호, 2022. 11. 11, 제정]

109. 통영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26] [조례 제1760호, 2022. 12. 26, 제정]

110.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30] [조례 제2043호, 2022. 12. 30, 제정]

111. 함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 3] [조례 제2716호, 2022. 1. 3, 제정]

112. 함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1. 29] [조례 제2753호, 2022. 11. 29, 제정]

113.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0. 4] [조례 제3173호, 2022. 10. 4, 제정]

114.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7] [조례 제2922호, 2022. 12. 27, 제정]

115.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 22] [조례 제 2856호, 2022. 11. 22, 제정]

116. 화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1] [조례 제2655호, 2022. 12. 21, 제정]

117.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2. 11. 4] [조례 제5977호, 2022. 11. 4, 일부개정]